

「가칭)2023년 새마을 낭만 야시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구 미 시

# 「가칭)2023년 새마을 낭만 야시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  |
|----------|--|
| 의안<br>번호 |  |
|----------|--|

제출연월일 : 2023. . .  
제출자 : 구미시장

## 1. 제안이유

- 지역주민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구미만의 특색 있는 야시장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가칭)2023년 새마을 낭만 야시장 운영 민간위탁

### 야시장 사업 개요

- 시 기 : 10월 ~ 11월 예정
- 장 소 : 구미새마을중앙시장 일원 예정
- 예 산 : 위탁비 100,100천원(행사·운영·인건비 등)
- 내 용 : 공연, 체험부스, 푸드트럭 운영 등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제47조 제2항
- (필요성)
  - 야시장 운영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며, 기존 시장 상인과의 마찰 및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한 주변 상인들과의 유대감 형성 및 교섭할 수 있는 수탁업체 선정 필요

#### 다. 위탁사무 개요

- (위탁기간) 2023. 6月 ~ 2023. 12月
- (개장 전)
  - 운영(안전, 운영, 홍보) 계획 및 체험·공연행사 기획
  - 야시장 홍보 및 운영요원 선발
  - 야시장 환경(공연 무대, 간판, 경관조명, 포토존) 조성
- (야시장 운영)
  - 야시장 구역 정비(기존 매대·적치물 정리, 차량 통제)
  - 푸드트럭 도열 및 매대 위치 지정
  - 체험·행사 프로그램 운영 및 셀러 대상 위생·판매 수칙 교육
  - 관람객 질서 유지 및 안전 확보, 화재 및 무질서 등 비상 상황 대응
  - 시장 종료 후 환경정비(쓰레기 청소 등)
- (종료 후)
  - 정산 및 성과 측정·보고

#### 라. 수탁자 선정방식

- (모집방법) 공개모집
  - 시 홈페이지 게재를 통한 수탁자 모집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대학교수, 상인회, 공무원 등) 심의

3. 부서의견 :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타당함.

####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나. 2023년 제1차 구미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다.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 사진대지

□ 위치도(예 정)



□ 야시장 예시사진



# 가칭)2023년 새마을 낭만 야시장 운영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재정수반 요인

- 가칭)2023년 새마을 낭만 야시장 민간위탁시 운영비 지원에 따른 세출 발생
-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제47조(활성화 사업)

###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기간 : 2023년 ~ 2027년(5년)
- 총 40회 운영 및 무대행사 16회 진행
- 취식용 테이블 및 탁자 세트 30개
- 야간·휴일 일평균 인건비 6시간 근무, 무대행사 1일 6시간 진행
- ※ 타 야시장 지출단가 참고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
| 세출      | 100,100 | 100,100 | 100,100 | 100,100 | 100,100 | 500,500 |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
| 국 비     |         |         |         |         |         |         |
| 도 비     |         |         |         |         |         |         |
| 시 비     | 100,100 | 100,100 | 100,100 | 100,100 | 100,100 | 500,500 |
| 민 간     |         |         |         |         |         |         |
| 기 타     |         |         |         |         |         |         |
| 합 계     | 100,100 | 100,100 | 100,100 | 100,100 | 100,100 | 500,500 |

### 5.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운영비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재정소요액이 변경될 수 있음.

### 6.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시장활성화팀 김보우(☎2633)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 구<br>분                | 사업내용                          | 산출내역              | 금 액     | 비고 |
|-----------------------|-------------------------------|-------------------|---------|----|
|                       | 합 계                           |                   | 100,100 |    |
| 무<br>대<br>/<br>행<br>사 | 기획, 공연운영 인건비                  | 600,000 원 × 16 회  | 9,600   |    |
|                       | 공연자 사례비                       | 600,000 원 × 16 회  | 9,600   |    |
|                       | 무대조명, 앰프 임차                   | 680,000 원 × 16 회  | 10,880  |    |
| 이<br>벤<br>트           | 무료체험 부스 운영<br>(페이스페인팅, 포토존 등) | 200,000 원 × 16 일  | 3,200   |    |
|                       | 행사관련 인건비(3인/회)                | 110,000 원 × 48 명  | 5,280   |    |
|                       | 포토존 구성비                       | 3,840,000 원 × 1 식 | 3,840   |    |
| 운<br>영<br>비           | 일용직(일용임금)-5인                  | 110,000 원 × 200 명 | 22,000  |    |
|                       | 매대 및 간이식탁/의자 임차               | 600,000 원 × 40 회  | 24,000  |    |
|                       | 제세공과금                         | 1,000,000 원 × 2 월 | 2,000   |    |
|                       | 소모성물품비(쓰레기봉투 등)               | 15,000 원 × 40 회   | 600     |    |
|                       | 행사보험료                         | 2,000,000 원 × 1 식 | 2,000   |    |
| 홍<br>보<br>비           | 외부 현수막 제작                     | 80,000 원 × 10 매   | 800     |    |
|                       | 안내용 배너 제작-30곳                 | 55,000 원 × 30 매   | 1,650   |    |
|                       | 매대용 현수막 제작                    | 55,000 원 × 30 매   | 1,650   |    |
|                       | SNS 홍보, 기타                    | 150,000 원 × 20 일  | 3,000   |    |

## 관 계 법 령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지역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지역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추진계획의 연차별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과 연계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방향에 관한 사항
3. 시장과 상점가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4. 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주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6. 시장 및 상점가의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한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수립된 지역추진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시·도지사는 지역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지역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시·군·구의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제47조(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구미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
2. 수탁기간 1년 미만의 일회성 사무 또는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 소 관 부 서     |       | 일자리경제과              |
|-------------|-------|---------------------|
| 입<br>안<br>자 | 과 장   | 서 성 교               |
|             | 팀 장   | 이 응 남               |
|             | 담 당 자 | 김 보 우<br>(480-2633) |